

2020.5.1. 고령자고용법령 개정에 따른

#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란 무엇일까요?

구체적 내용은 '**사업주의  
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매뉴얼**'을  
통해 확인 가능  
고용노동부 홈페이지([www.moel.go.kr](http://www.moel.go.kr))  
'뉴스·소식 > 공지사항' 참조

## ⑤ 제공 방식은

사업주가 직접 제공하거나,  
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 
근로자가 전문기관에서 바우처  
방식으로 참여

### 재취업지원서비스 위탁할 수 있는 기관

- ① '직업안정법'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소(비영리 법인, 공익단체) 및 유료직업소개소(법인)
- ② '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' 제16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(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, 평생직업교육학원 등)

### 위탁기관의 요건

- ① 진로설계 또는 취업알선: 직업·진로상담 분야 자격증 소지자 또는 2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 + 별도의 상담공간
- ② 취·창업 교육훈련: 교육훈련 실시 관련 1년 이상 경력을 갖춘 자

## ⑥ 운영 체계는

③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기준에 따른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음연도 3월말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운영결과를 제출

진로설계,  
취업알선,  
취·창업  
교육 중  
서비스  
제공

사업주 →  
이직예정자

재취업지원  
서비스  
운영결과  
보고  
(다음연도  
~3월말)

사업주 →  
관할 지방고용  
노동관서  
(지역협력과)

재취업지원  
서비스  
운영결과  
확인·점검

관할 지방고용  
노동관서  
→ 사업주

### ③의 운영기준과 다른 서비스 (창업공간 제공 등) 제공시에는

사업주는 전년도 11월 말까지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계획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, 승인된 내용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고, 다음연도 3월말까지 운영결과를 보고해야 함

## 사업주께서는!

1 근로자를 1,000명 이상 고용하고



2 5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 
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 예정이라면



3 재취업지원서비스를



4 근로자의 이직예정일 직전 3년 이내에



5 직접 또는 위탁 등의 방식으로 제공하시고



6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결과를 알려주세요

## ① 의무 대상 사업주는

전년도 매월 말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평균이 1,000명 이상인 사업의 사업주

## ② 의무 제공 대상 근로자

1년 이상(계약직은 3년 이상) 근속한 50세 이상의 비자발적(정년, 경영상 필요 등) 사유로 이직하는 근로자

### 근로자가 참여를 거부할 수 있나

근로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참 의사를 서면 (또는 전자적 방식)으로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음

- ① 이직후 취업 또는 창업이 확정된 경우
- ② 이직후 취업 등의 의사가 없는 경우
- ③ 질병·부상 등으로 참여가 어려운 경우

## ③ 재취업지원서비스란

이직하는 근로자의 재취업 또는 창업을 위해 제공하는 진로설계, 취업알선, 취·창업 교육, 그 외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비스\*등

\*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계획서를 별도 제출

###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운영 기준

진로설계	취업알선	취창업교육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• 이직 이후 변화 관리 등에 관한 교육</li><li>• 소질·적성·경력에 관한 진단과 상담을 바탕으로 향후 생애와 직업에 관한 진로설계</li>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• 취업알선 및 상담(이력서·자기소개서 작성요령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포함)</li>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• 구직, 창업 희망에 따라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·향상시키기 위한 교육·훈련</li>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• 16시간 이상 교육과 상담 제공</li><li>• 개인별 '진로 설계서' 작성</li>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• 이직전 3개월 이내 2회 이상 취업알선 (1회 이상 대면 서비스 제공)</li><li>• 2일 이상, 16시간 이상 실시</li><li>• 집체·현장실습 원칙, 일부 원격 방식 병행수행 가능</li></ul>

## ④ 제공 시기는

해당 근로자 이직(예정)일  
직전 3년 이내에 제공

경영상 퇴직, 희망퇴직 등의 경우  
이직 전 1년, 이직 후 6개월 이내  
제공

### 제공시기의 특례

제도시행일(2020.5.1.)로부터 1년 이내 이직 예정인 근로자의 경우 2021.4.30.까지 재취업 지원서비스 제공 가능